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1. 제안이유

숲길 실태조사 위탁시 업무 수행 기관·단체의 범위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기술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숲길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산림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법 '23.10, 시행령 '24.4)되었으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추가 마련(안 제11조제5호 신설)

1)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공모전' 결과 행정제도 개선과제로 선정('24.7)

2) '숲길 실태조사'는 숲길의 일반현황, 위험도·이용의 편의성 및 숲길의 훼손 정도 등을 조사하는 업무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자격을 갖춘 종합업,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전문업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 추가(안 제11조의5제1항제1호)

1) 장거리트레일 등 숲길에 대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숲길의 편의시설이 숲길의 쉼터, 대피소, 매점, 임산물판매장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다. 숲길의 운영·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 명시(안 제11조의5제5항 신설)

- 1) 숲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한 숲길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숲길의 안전·편의시설 및 안내센터 등 시설물 설치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위험이 없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임조항 신설(안 제15조제6항 신설)

- 1)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지방산림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마.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시행령 별표1의3)

- 1)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에 대한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개정('24.7.30)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을 개정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 타 : 입버집예고(2026. 6. 26 ~ 8. -40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산림휴양 전문업 및 녹지조경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제11조의5제1항제1호 중 “안전시설·종합안내판”을 “안전시설·숲길쉼터·대피소·매점·임산물판매장·종합안내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3조의4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 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산림휴양 전문 업 및 녹지조경 전문업 산림기술 용역업자
제11조의5(숲길의 운영·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5(숲길의 운영·관리) ① - ----- ----- -----.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u>안전시 설·종합안내판</u> , 전망대 및 해설 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 수·관리	1. ----- ----- <u>안전시설</u> <u>· 숲길쉼터·대피소·매점·임</u> <u>산물판매장·종합안내판</u> ----- ----- --

2. ~ 5.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물 설치하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u>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3조의4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0. 6. 2.>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종 목	자 격 기 준
1. 산악승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승마 또는 근대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2. 산악자전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사이클, 자전거,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3.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 글라이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4. 산악스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스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또는 스노우보드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5. 산악마라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육상, 근대5종, 철인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6. 암벽등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7. 오리엔티어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오리엔티어링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8. 로프 체험 시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비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 법인·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등산레포트팀	
연 락 처	(042) 481 - 8876